

#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복지분야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Disability Welfare*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애인복지사업은 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 사업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평가는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7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의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 사업기반의 확충, 그리고 각종 조례의 제정 및 장애인 생신품 우선 구매 확대 등의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 1. 평가틀 구성의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 욕구의 급격한 팽창 등 장애인 복지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의 확대,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 사업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평가를 통해 과연 지방이양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평가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지역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기관장의 장애인복지분야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서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투입(input)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 평가한다. 투입자원은 크게 예산, 조직 및 인력, 시설 등으로 나눈다.

둘째,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기획 능력 및 추진 능력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throughput)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조례가 어떤 한 것이 있는지 등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의 제정 수를 통해 평가한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한 실적(output)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이양 사업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를 투입예산을 통해 평가하며, 그 외에도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편의시설 설치율, 그리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액에 대하여 평가한다.

넷째, 평가지표는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지표의 척도를 구성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발전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는다. 척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된 지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 횟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여부 등이다.

## 2. 2007년도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 1) 사업기반 영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투입(input)에 해당하는 사업기반 부문에는 모두 3개의 지표가 사용되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의 재정 측면에서는 등록장애인 1인당 투입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비를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등록장애인 1인에게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등록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등록장애인 1인당 지표는 장애의 중증도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장애의 중증도에 따른 투입예산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중증장애인 1인당 지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및 자원 측면에서는 먼저, 장애인복지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빈번히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의 평균 재직월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평가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전담과의 신설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업무의 조정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개최실적을 통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러한 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사업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지표로서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관련 기금 적립액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관련 기금확대가 중요함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시설 지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시설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시설 지원 예산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에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장애인 시설에의 투입 예산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장애인복지사업 기반을 평가해 보면 첫째, 장애인복지사업비를 해당 지역의 등록장애인수로 나눈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5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전체적으로 100점 기준으로 59점 정도의 수준을 보여 전년도 평가(48점)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준을 보였다. 그렇지

만 장애인복지 사업비면에서 충분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각 시·군·구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사업기반으로서 전담계의 설치,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평균 재직월수가 12개월 이상인지의 여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개최실적이 연간 2회 이상인지의 여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여부 및 장애인 1인당 적립액이 1만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있어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가 5점 만점으로 평균 2.58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와 기준이 달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복지 사업기획 및 추진에 대한 기반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은 5점 기준에서 평균 2.75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55점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평가 점수인 48점보다는 증액되었으나 역시 시설 예산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과정(throughput) 지표로서 모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을 어느 정도 법적 기반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의 수를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례에는 반

드시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같은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은 2.51점(2006년 2.33점)으로 전년도 보다는 다소 향상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사업실적 영역

사업실적부분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 사업의 실적으로서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사업의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사업비 증감율을 지표화하였다. 본 지표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지방이양사업이 확대 또는 축소

되고 있는지를 사업비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심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본 지표선정의 의의가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성과로서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 생 산품 우선 구매액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편의시설 우선 설치, 그리고 장애인이 생산하고 있는 생 산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총 26개의 지방 이양사업의 사업비 증감률(결산액 기준)에 있어서는 2005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가 5 점인데 반해 평균 2.89점으로 전년에 비해 많은 지자체가 지방이양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실적에 있어서 첫째, 읍·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률에 있어서는 3% 이상일 경우가 5점으로 평균 2.95점으로 전체적으로 2%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으며, 점수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여 장애인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민간부문 보다 취업률은 높지만 3%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관할지역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5% 이상이 5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2.77점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율 결과에 비해 낮은 점수로서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차이가 있다.

셋째, 장애인 생 산품 우선구매액의 비율은 전체 품목 구매액 중 장애인 생 산품 구매액의 비율(2006년도는 평균 구매액으로 평가)로서 전국 평균의 80% 이상인 경우가 5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평균 2.94점으로 전국 평균치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실적이 미비하고 각 지자체간 편차도 큰 것

으로 나타나 장애인이 생산한 사무용지, 종이컵, 화장지 등의 우선구매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개별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 1) 사업기반 영역

#### (1) 장애인복지사업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국 평균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는 524천원으로 2006년의 432천원에 비해 9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사업비보다 80% 이상(약 777천원)인 지자체는 8.6%인 반면, ±40% 수준인 605천원~259천원 범위의 지자체가 47.4%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0%~-80% 수준인 259천원~86천원 범위도 32.3%를 차지

표 1. 장애인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표 1. 장애인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단위: 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A. 사업기반	A1-1) 장애인복지사업비	5	1	2.94	0.900
	A2-1) 장애인복지사업기반	5	1	2.58	0.994
	A3-1)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 (생활시설, 지역 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5	1	2.75	1.335
B. 사업기획및 추진	B1-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수	5	1	2.51	1.202
C. 사업실적	C1-1)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5	1	2.89	1.284
	C2-1)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5	1	2.95	1.469
	C2-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5	1	2.77	1.502
	C2-3) 장애인 생 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5	1	2.94	1.224

주: 5점(1~5점)척도로 구성됨.

표 2. 장애인복지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표 2. 장애인복지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1-1) 장애인복지사업비	시·군·구청의 전체 장애인복지사업비/등록장애인 수	
	⑤ 전국평균 +80%이상	8.6
	④ 전국평균 +40~+80%미만	10.8
	③ 전국평균 ±40%미만	47.4
	② 전국평균 -80%~-40%미만	32.3
	① 전국평균 -80%미만	0.9
장애인복지사업비(4,351,569.7)천원/ 등록장애인수(8,464.9)명=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 (523.8)천원		

주: (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하여 복지에산면에서 전체적으로 낮으며 지자체간 편차가 큰것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사업기반

장애인복지 사업기반은 장애인복지전담계 설치, 전담공무원 평균재직월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개최실적, 장애인복지기금 및 1인당 적립액의 4개 항목에서 각 지자체별로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기준은 전년도의 평가에서 드러난 점수분포를 바탕으로 보다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작성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사업기반의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자체는 2.2%에 불과한 반면, 2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고, 1개는 28.9%로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1~2개 정도의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4개 사항 중 1가지도 해당하지 않

는 지자체가 15.9%나 되어 장애인복지 사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각 복지사업기반 영역의 기준별로 해당하는 지자체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이다. 먼저 사업기반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전담계의 설치에 있어서는 약 절반정도인 48.7%의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복지팀과 같은 전담부서의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담 계는 아니나 '계' 명칭에 부분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어 조직적 측면에서도 사업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지자체는 총 232개 시·군·구 중 67.2%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기반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평균 업무전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장애인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 11조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2007년 개정법률에서는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우인데, 많은 지자체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복지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인 시·군·구는 전체의 15.1%에 불과하여 전년도 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많은 시·군·구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1회 이하인 곳도 있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 개최도 연간 4회 이상인 곳도 있었지만 매우 드문 실정이다. 결국 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확대 설치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이 평균 1만원 이상인 지자체는 27.2%로 나타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이 운용되지 않고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3) 등록장애인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예산 현황을 <표 5>에서 보면, 전국 평균은 1인당 285천원으로 2006년의 평균 239천원에 비해 46천원인 상된 금액이다. 이러한 시설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사업비의 54%를 차지하여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시설지원 예산 비중이 높음을

표 3. 장애인복지사업기반의 평가점수 분포

표 3. 장애인복지사업기반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개월,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2-1) 장애인복지사업기반	a) 장애인복지 전담계가 설치되어 있다.	
	b)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가 12개월 이상이다.	
	c)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이다.	
	d) 장애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1인당 평균 적립액이 1만원 이상이다.	
	⑥ 위의 내용 중 4개가 해당된다.	2.2
	④ 위의 내용 중 3개가 해당된다.	14.7
③ 위의 내용 중 2개가 해당된다.	38.4	
② 위의 내용 중 1개가 해당된다.	28.9	
①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15.9	

표 4. 장애인복지사업기반의 지자체 비율

표 4. 장애인복지사업기반의 지자체 비율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비율	계
A2-1) 장애인복지사업기반	a) 장애인복지 전담계가 설치되어 있다.	48.7(113)	232(100.0)
	b)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가 12개월 이상이다.	67.2(156)	232(100.0)
	c)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이다.	15.1(35)	232(100.0)
	d) 장애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1인당 평균 적립액이 1만원 이상이다.	27.2(63)	232(100.0)

표 5.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3-1)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예산(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	
	⑤ 전국평균 +80%이상	17.7
	④ 전국평균 +40~+80%미만	6.0
	③ 전국평균 ±40%미만	30.2
	② 전국평균 -80%~-40%미만	25.9
	① 전국평균 -80%미만(없는 경우 포함)	20.3
장애인시설 지원 총액(2,442,544.4)천원/등록장애인수(8,464.9)명=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시설 지원액(285.2)천원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보여주고 있다.

지원예산의 전국 평균액을 기준으로 ±40% 수준인 117천원~399천원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80%~-40%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25.9%, -80%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20.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의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 (1)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

사업기획 및 추진영역에 있어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

표 6.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개)

평가지표	척도	비율
B1-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수	
	⑤ 조례 제정수가 5개 이상이다	10.8
	④ 조례 제정수가 4개이다	10.3
	③ 조례 제정수가 3개이다	14.7
	② 조례 제정수가 1, 2개이다	47.4
	① 제정된 조례가 없다	16.8
장애인복지사업 조례 제정수(2.2)개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시립(구립)장애인복지관 설치조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 설치운영조례 등이 포함되었다.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수는 평균적으로 각 시·군·구에서는 2.2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전년도(1.9개)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조례수 분포에 있어서 많은 곳은 5개 이상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10.8%가 있으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47.4%의 지자체가 1~2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례가 없는 곳도 16.8%나 되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관련 업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관련 조례의 제정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 3) 사업실적 영역

### (1)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모두 26개 사업으로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76.5%의 증가율을 보여 전년도의 30.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여전히 복지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자체도 19.4%를 차지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10% 범위에서 증가한 지자체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10~30% 범위의 증가를 보인 지자체는 30.2%로 대부분은 30%이내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곳도

표 7.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평가지표	척도	비율
C1-1) 장애인복지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사업비 증감률	a: 2005년도 장애인 지방이양사업집행액 b: 2006년도 장애인 지방이양사업집행액 (b-a)/a×100	
	⑤ 전년대비 50%이상	19.4
	④ 전년대비 30%이상~50%미만	6.5
	③ 전년대비 10%이상~30%미만	30.2
	② 전년대비 0%이상~10%미만	31.5
	① 전년대비 0%미만(감소)	12.5
(2006년도 총사업비(1,568,554.5)천원/2005년도 총사업비(1,398,458.2)천원)×100-100= 장애인복지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76.5)%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12.5%를 차지하여 이양사업의 사업비 증감률에서 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공공기관 취업률은 본청이나 관할 읍·면·동에 취업한 등록장애인 비율로써 전국 평균은 2.4%로 2006년 평가의 2.2%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취업률이 2% 이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3% 이상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곳도 19.8%나 되었지만 2.0% 미만인 곳도 24.1%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부분을 이끌어야 할 공공부분이 장애인의 무고용비율(2%)를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의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83.9%로써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기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80% 미만인 지자체가 29.3%로 가장 많은 반면 95% 이상인 곳도 20.3%로 대체로 이 범위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각 시·군·구의 청사 등에는 최소한 편의시설 설치가 100%까지 확충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확보 만이 아니라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전체 품목 구매액의 평균 3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0%인 20.3%~47.5% 범위

표 8.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의 평가점수 분포

표 8.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비율
C2-1)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⑤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3% 이상	19.8
	④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5~3% 미만	21.6
	③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2~2.5% 미만	16.8
	②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0~2.2% 미만	17.7
	①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0% 미만	24.1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2.4%)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의 평가점수 분포

표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비율
C2-2)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⑤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95% 이상	20.3
	④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90~95% 미만	13.4
	③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85~90% 미만	18.5
	②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80~85% 미만	18.5
	①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80% 미만	29.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83.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10.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의 평가점수 분포

표 10.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평가지표	척도	비율
C2-3)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전체 품목 구매액×100	
	⑤ 전국평균 +80%이상	18.1
	④ 전국평균 +40~+80%미만	9.5
	③ 전국평균 ±40%미만	29.3
	② 전국평균 -80%~-40%미만	34.9
	① 전국평균 -80%미만(없는 경우 포함)	8.2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83,990.2)천원/전체 품목 구매액(268,893.7)천원=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비율(33.9%)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29.3%이며, 20.3% 미만인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43.1%로 대체로 우선 구매 실적이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정책제언

### 1) 사업기반 영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분야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사업비는 평균 52만 4천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9만 2천원 정도 증액되었으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많은 자치단체가 평균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자치단체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 복지사업예산이 자치단체의 규모와 등록장애인 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실적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장애인복지 사업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의 설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이 특히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부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 3년 이상 업무의 지속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상 3년 이상의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한 1년의 의무적 근무와 함께 업무평가시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실시를 제언한다.

셋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여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복지 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지역 단위 장애인복지사업의 수요 증가를 대비하

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능하면 위원회의 분기별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단위의 장애인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을 확충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기금액은 장애인 1인당 전국 평균이 3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천원 정도 늘어났으나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1인당 기금적립액이 가장 낮아 민간 자원의 동원 등을 통하여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분야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역별 장애인복지관련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가결과 사업기반 및 사업실적과 조례제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장애인이 많고 1인당 복지예산 규모가 큰 대도시의 경우 조례제정이 중·소도시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바,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역거주의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특성사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성과

를 낼 수 있는 지역사업들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3) 사업실적 영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분야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 나간다.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장애인복지사업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지원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확충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에서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곳도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크며, 지방이양사업비가 높은 곳은 재정자립도도 높고, 등록장애인이 많은 지자체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공공기관 취업률은 2.4%로 전년대비 0.2% 포인트 높아졌으나, 취업률이 1% 정도에 불과한 자치단체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가 전인구의 4.6%(2005년)에 이르고 범주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공공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가 최소 3% 이상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동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서도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의 배치 확대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편의시설도 기준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한 직업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에 있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평가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므로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문헌